

#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9,162,246	20,674,867
일반회계	629,979,710	18,899,391
특별회계	59,182,536	1,775,476
공기업특별회계	52,644,542	1,579,33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574,670	1,127,24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069,872	452,096
기타특별회계	6,537,994	196,140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069,893	62,097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434,575	73,037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543,508	46,30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90,018	14,70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001,03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